

충청북도 소재 ·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소재·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양섭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가. 이 조례의 근거법인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장비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

나. 소재·부품·장비(이하 “소부장”이라 한다)산업에 관한 주요사업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,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책무 등(안 제1조 ~ 안 제3조)

나.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(안 제4조)

다.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등(안 제5조 ~ 안 제7조)

라.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(안 제8조 ~ 안 제10조)

## 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### 가. 제안배경

- 현행 조례(시행 2022. 10. 7.)는 근거법인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(시행 2022. 6. 29.)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, 소재·부품산업에 관해서만 규정하여, 소부장산업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음
- 또한, 현행 소재·부품산업 육성위원회는 단순히 기본계획 수립 등 소재·부품분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, 이마저도 위원회 구성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을 통한 조례정비의 필요성이 있음
- 따라서 충북도의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

### 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칙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안 제1조는 현행 조례의 문맥 등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, 미래 성장동력인 소부장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명확히 규정함
- 안 제4조는 소부장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, 정부가 작성하는 기본계획 대신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수정하고, 그 포함사항을 구체화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

또한,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, 소부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

-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소부장산업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,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문맥에 맞지 않는 사항은 자구를 수정함
- 안 제7조는 조의 제목을 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지원사업의 평가에서 지도·감독으로 변경하고, 그 내용을 구체화함
-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
  - 특히,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 또는 자문으로 확대하고, 위원을 전략산업육성위원회 구성원에서 독자적인 위원으로 구성함
  - 또한, 위원의 경우 충청도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그 밖에 소부장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다양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였음
- 그 밖에 현행 조례에 누락된 장비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, 『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』에 따라 자구 수정 등 조례를 정비하였음

## 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이 조례안은 근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장비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은 물론, 소부장산업의 생태계를 다시 점검하는 등 충북도의 미래성장동력으로써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은 반드시 필요함
- (타당성) 소부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의 구체화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의 강화 등은 그 내용이 적절하고, 사업 시행을 위한 타당성은 충분함
- (법적합성) 근거법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그 밖에 근거법인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은 2019년 12월 31일 전부개정된 후 두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, 현행 조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
따라서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고, 소부장산업 육성·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음
  - 충북도는 전국 최초(시행 2019. 9. 23.)로 소재·부품산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, 소부장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·지원해 왔음
  - 하지만, 소부장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정비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<sup>4)</sup>가 늘고 있어, 후발 주자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
  - 이번 전부개정을 계기로 소부장산업 관련 정책을 되돌아보고, 강점은 보장하고,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

4)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소부장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·시행 중인 곳은 충북도를 포함한 11개 단체이며, 이 중 경북(2021. 1.), 전북(2021. 5.), 광주(2022. 12.), 대구(2022. 12.), 부산(2023. 5.) 등 5개 단체는 장비산업을 포함한 소부장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